

#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



구 미 시

##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3조 및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 함.
- 나. 아울러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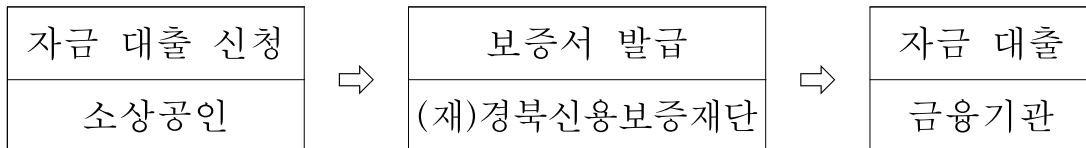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출연개요

- 1) 출연기관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
- 2) 대표자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
- 3) 소재지 : 구미시 이계북로 7
- 4) 출연예정액 : 금3,000백만원(본예산 20억원+추경예산 10억원)
- 5) 출연금 사용처 :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

나. 주요사업 : 소상공인 특례보증

- 1) 사업기간 : 2025년 ~ 보증 한도까지(자금 소진시 까지)
- 2) 보증규모 : 출연금의 10배수 보증
- 3) 지원대상 : 구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- 4) 지원한도
  - 1인당 50백만원 이내
  - 다자녀(2명이상), 청년창업자, 착한가격업소 70백만원 이내
- 5) 상환방법 : 5년 이내
  -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,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택일
- 6) 심사기준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축여부 심사
- 7) 지원방법
  - 시 출연금 30억원의 10배수인 300억원을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



## 8) 지원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 구분	계	2020	2021	2022	2023	2024
출 연 금	6,500	1,000	미출연	1,000	2,000	2,500
보증금액	39,999	10,000		10,000	19,999	진행중
보증업체수 (개 소)	1,812	490		466	856	진행중

### 다. 출연 필요성

- 1)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2)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소상공인기본법」,  
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예산재정과장

라. 기 타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

## [재)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

- (1) 기관명(주소)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 (구미시 이계북로 7)
- (2) 기관소개
  -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함
- (3) 설립근거
  - 법률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
  - 조례 :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
- (4) 주요기능
  -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상담
  - 창업정보제공 : 관내 업소분포, 유망업종, 창업트렌드
  - 창업적성 검사 및 사업성 평가
  - 인허가 절차 안내, 신청서 작성 등
  -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상담

#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금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출연금의 10배수 특례보증 지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 출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 비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
5. 부대의견 : 출연안 동의 후 예산부서 재정합의 등 충분한 후속검토 필요

6. 작 성 자 :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 김선정(☎480-2612)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「소상공인 기본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보증채원)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보증채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소관부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희
	팀 장	김 소 연
	담 당 자	김 선 정 (480-2612)